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9.

발의자 : 이인선 · 박정하 · 강선영

성일종 · 박준태 · 김정재

고동진 · 조정훈 · 배준영

김성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.

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의3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